

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

심 사 보 고 서

1993. 3. 29

총무사회산업위원회

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3년 3월 22일,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3월 22일

다. 상정일자 : 제23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무 3계장 이병웅)

가. 제안이유

본 조례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내부부의 동 조례안 준칙에 의거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음.

나. 주요골자

-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건설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
- 동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및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.

3. 검토의견

- 고속철도 건설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공단에 대하여 구세의 과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이

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습

5. 토론요지 : 없 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12명 전원찬성)